

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. 6. 12 선고 2020가단50117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]

전 문

원고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화 담당변호사 김형빈

피고1. B

2. C

3. D

변론 종결2020. 4. 17.

판결 선고2020. 6. 12.

주 문

1. 피고들은 원고에게,

가. 평택시 E 대 1,180m² 중 별지 도면 표시 11, 16, 17, 18, 10,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가 부분 토지 10m² 지상건물 및 같은 도면 표시 17, 19, 20, 9, 10, 18, 1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94m² 내 담장을 각 1/4 지분의 한도 내에서 철거하고, 위 각 토지를 인도하고,
나. 각 1,592,819원 및 2020. 2. 1.부터 위 가항 기재 토지 인도일까지 월 15,66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자백간주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)

판사김지혜

별지